TONGYANG
LIFE INSURANCE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Contents

- I 퇴직연금제도 일반
- Ⅱ 확정급여형(DB)제도 추가 교육
- Ⅲ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 교육

※ 가입자 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사업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PART. I 퇴직연금제도 일반

1. 급여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1]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매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형 기업복지제도입니다.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제도화 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제도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하여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급여종류 / 수급요건	· 연금:10년 이상 가입 / 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 수령기간 지정 · 일시금: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자	
급여수준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함)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제도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급여종류 / 수급요건	· 연금:10년 이상 가입 / 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 수령기간 지정 · 일시금: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자	
급여수준	·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	
적립금의 운용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임 ·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원리금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운용방법의 변경	· 확정기여형은 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수 있음 · 운용방법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보장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악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부담금 납입	· 기업부담금 :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 추가부담금 : 근로자 선택 사항으로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자산운용이 가능함(기존 연금저축, DC 및 IRP 추가납입금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음)	



3) 혼합형 제도

- 사용자가 하나의 근로자에 대하여 DB · 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법정사유에 한하여 적립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누구나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수령방법	· 일시금 :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자 · 연금 : 만55세 이상이며, 연금 수령(5년 이상 수령 조건)을 선택한 자
자산운용	· 운영주체 : 가입자 본인 · 운용수익 :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 퇴직금액 결정
추가납입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기존 연금저축, DC 및 IRP 추가납입금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음)

5) 퇴직연금 제도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제도(DB)	확정기여형제도(DC)	개인형 IRP
퇴직급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
적용형	EH	근로자 재직 시		퇴직 후
급여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적립금 운용권한 및 책임		회사	가입자	
수급권 보호		보장	보장	
개인 추가납입		불가능	가능(연 1,800만원 한도 + α*)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급여 종류별	연금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수급요건	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이체액: "4. [5]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참고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업무처리절차

-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시 해당 법정사유를 확인하고, 각 사유별 필요한 제출서류 등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및 향후 퇴직 시의 소득세 세금계산등을 안내합니다.
- ③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기 운용중인 상품의 매도처리 등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2]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사유

법적사유(근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각 사유 별 주요 증빙서류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서 or 주택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자 서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목적물의 건물등기부등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사업장당 1회 한정)	· 임대차계약서 · 주택매매계약서 외 사유①에 해당하는 서류 등
③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진단서 · 병원(요양기관) 발행청구서 ·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서류 등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 확인 가능한 적법한 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등) · '개인회생절차 개시' 확인 가능한 적법한 서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변제 계획안) 등
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대출 원리금에 한함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재난 및 안저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사유에 해당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9호)	·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환 3개월 이상 연체 확인서(사업자 발부분) 등 ※ 당사가 담보권자가 아닌 경우 담보계약 증빙 서류 등
⑥ 재난(「재난 및 안저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사실 증빙서류 등

[3] 퇴직연금(DB/DC/IRP) 담보대출 사유/한도

법적사유(근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담보대출 한도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사업장당 1회 한정)		
③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⑥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저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9호)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임금 감소 및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	

^{**} **담보대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제공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 수급액 변경에 따른 관련법(임금채권법 등)과의 상충으로 실<mark>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려워 현재 시행되지 않음</mark>



[4]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 납입시기와 지연 이자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DC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 ※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②「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사유(파산선고, 회생, 도산 등)
-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등에 관한 사항

- 임금의 정의, 임금 산정 시 포함 · 불포함 항목 등에 대한 정보

[1] 임금의 정의

- ①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② 평균임금: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③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및 불포함 항목

구분	내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① 현물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현물급여 ② 통화지급: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 아간, 휴일 근로수당 / 연차수당 / 자격수당 / 상여금 등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평균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① 경영성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없는 경영성과급 ②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③ 경조금, 의료비, 실비변상적인 급여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 중 상해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등 적법한 쟁의기간의 임금과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제외하여 계산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

[1] 퇴직 시 급여 지급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절차

구분	내용	
· 급여지급 사유 발생 시 사용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받아 확인 (퇴직급여 수령시에는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		
2단계	· 사용자는 가입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확인하고,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한 후 급여 지급을 지시	
3단계	·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	
4단계	· 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 운용자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퇴직 IRP 계정으로 자금을 이전	
5단계	·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IRP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처리	

^{*} 동양생명 퇴직연금 콜센터: 1899-4707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등 안내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자동이전 및 자동이전 예외 사유

- DB 및 DC 가입자가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외 사유
 - ①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②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 ⑤ 타 법률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경우 잔여 금액은 개인형IRP 등으로 이전)
 - ⑥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2) 개인형IRP 이전 시 효과

- 과세이연 효과: 일시금으로 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시기를 이연함으로써 투자수익 증가효과 기대
- 다양한 상품군: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 등 고객의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설계 가능
- 절세효과: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방법

- ① 퇴직 전에 근로자(가입자)가 원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직접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개설
- ②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급여신청서 및 IRP계좌를 받아 확인한 후 운용관리기관에 퇴직급여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되도록 지시
- ③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 ④ 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 운용자산을 매각한 후 근로자(가입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 [단, DC형 가입자가 운용자산의 매각없이 현재 운용상품으로 자산의 이전(이하, '현물이전'이라 함)을 원할 경우, 자산관리기관과 IRP계좌 개설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현물이전 처리 가능]



1) 확정급여형(DB) 가입자 퇴직 시 처리절차

구분	내용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개설 · IRP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자(회사)에게 퇴직 신청	
사용자 (회사)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 퇴직통보 및 퇴직급여 지급 신청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법률상 전액지급 예외사유 해당하는 경우 적립비율 만큼 지급신청 ·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처리 후 IRP 사업자에게 과세이연 내역 송부	
퇴직연금 사업자	· 전액 지급 시 퇴직근로자의 'IRP계좌'에 과세이면 퇴직급여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예외사유 해당 시 퇴직근로자의 'IRP계좌'에 적립비율만큼 이전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퇴직급여 신청하면서 잔여 부담금으로 DB 계정에 이체 또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IRP로 퇴직급여 이체	
※DB 전액지급 예외 사유	① 사업주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사업주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③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기준책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 보다 낮은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최소적립비율) ⑤ 다음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기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⑥ 그밖에 급여를 전액지급하면 다른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IRP 자동 이전 예외 사유		

2) 확정기여형(DC) 가입자 퇴직 시 처리절차

구분	내용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서 퇴직IRP 계좌 개설 · IRP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자(회사)에게 퇴직 신청	
사용자(회사)	· 해당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 퇴직통보 및 퇴직급여 지급 신청 · 미납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 신청시 잔여부담금 추가납부를 통지한 후 DC 계좌에 납부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처리한 후 퇴직근로자의 '퇴직IRP' 계좌에 세전 퇴직급여 지급 · 퇴직근로자가 IRP를 타금융기관에 개설한경우 : 해당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으로 과세이연내역 납부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된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구분	상품명	਼ ਰੋ	상품보수
원리금보장형	이율보증형	1년, 2년, 3년, 5년 만기	없음
	금리연동형	매월변동	없음
실적배당형	배당주혼합형	주식편입 40% 이내 실적배당형(채권혼합형)	0.65%
	가치주혼합형		0.65%
	인덱스혼합형		0.58%
	Active 혼합형		0.65%
	글로벌멀티인컴형	주식편입 60% 이내 실적배당형(혼합형)	0.597%
	주식형	조시[편이 60% 이사 시전베(단청/조시청)	0.40%
	해외주식형	주식편입 60% 이상 실적배당형(주식형)	0.49%

[※] 상세한 사항은 동양생명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 ISA계좌 만기시 개인 · 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지방세 포함)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지방세 포함)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1] 일시금 수급 시 퇴직소득 등에 대한 과세체계

-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연분연승: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퇴직소득이 일시에 과세될 경우 동 시점의 다른소득과 종합합산하여 누진과세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담 조정안

(-) 근속 연수¹⁾ 퇴직소득금액= (÷) 근속년수 환산 급여 (-)차등공제²⁾ 퇴직급여 $(\times)12$ 공제 퇴직소득 화사 (x) 근속년수 퇴직소득 (x) 종합소득세율 산출 세액 (÷)12 산출 세액 과세표준

1) 근속 연수 공제

근속 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²⁾차등 공제

환산 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 시 소득의 원천과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연금 수령 요건
- ① 만 55세 이상
- ② 가입 후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③ 연금 수령 개시 신청
- ④ 연금수령 한도내 수령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 연금 수령 외 인출은 모두 "연금 외 수령" 에 해당

- 인출방식별 과세체계

인출	V 드이션	인출방식별 과세방법		
순서	소득원천	연금수령	연금외 수령	
1	추가납입 세액 공제 X	과세 제외	과세 제외	
2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 (60%) ¹⁾ 분리과세]	퇴직소득세(분류과세) * 단,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연금 소득세	
3	추가납입 세액 공제 ()	·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3.3~5.5% ²	기타소득세 (16 5% 분리고세)	
3	운용수익	·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16.5%	* 단, 부득이한 사유 ³ 해당 시 연금소득세	

^{*} 상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60%

주2) 연금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주3)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사회적 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3] IRP 과세이연에 관한 사항

1) 과세시점 이연

-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과세시점을 최종은퇴시점(해약시) 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및 연금 소득세 적용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수령시 또는 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최종수령시점까지 과세이연되며, 적용되는 세율도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는 과세이연특례

연금수령요건(① 55세 이후 인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는 과세이연 특례를 허용한다. (2016년 6월 1일 이후 인출하여 이체하는 경우 적용)

[4] 가입자 추가납입 관련 세제

구분	내용
DC 추가납입	· 근로자 선택사항으로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자산운용이 가능함 ·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납입된 원금 중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IRP 추가납입	·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납입된 원금 중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6.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처리 방법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란 현재 운영중인 퇴직연금제도를 노사합의나 제도변경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입니다.
-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미납 또는 부족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 폐지 시 가입자 공지사항	① 가입자별 미납 부담금 내역 (DC형)
	② 적립비율 및 부족한 부담금 (DB형)
	③ 미납 또는 부족한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④ 급여 지급 절차
	⑤ 중간 정산 대상 기간 등

[2]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 퇴직연금제도의 중단이란 사용자의 재정압박에 따른 부담금 장기 미납으로 인해 노동부의 중단 명령을 받은 상황과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 노동부 장관이 당해 사업자의 퇴직연금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적립금 운용,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됩니다.









7. 자산,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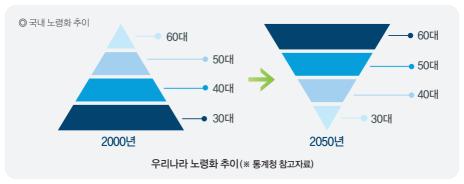
[1]노후설계의 중요성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준비 자금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 ①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대수명은 2010년 81세에서 2023년 91세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은퇴기간 또한 20년 이상 연장되어 더 많은 노후준비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 ② 물가상승률 3% 가정 시 20년 후의 자산가치는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노후준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

물가상승률	자산가치	20년 후 자산가치	30년 후 자산가치
3%	1억	5,537만원	4,120만원
5%	1억	3,769만원	2,314만원

- ※ 이자가 없다고 가정하여 물가상승만을 반영한 금액
-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국가적 노후보장 여력이 감소 될 것 입니다.
- ① 고령화와 출생률 하락은 실질적인 노인 부양인구의 축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②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 및 수령시기의 연장은 노후설계에 있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지표입니다.

◎ 연령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출생연도	수령연도	수령나이
53 ~ 56년	2013년 ~ 2017년	61세
57 ~ 60년	2018년 ~ 2022년	62세
61 ~ 64년	2023년 ~ 2027년	63세
	2028년 ~ 2032년	64세
69년 이후	2033년 이후	65세

[2]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연령대별 자산기준, 평균적 생애설계 시고려사항)

-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은 결혼, 자녀, 주택마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부채관리를 통하여 연령대별 자산관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30EH	40대	50대	60대 이상
생애주기	직장생활 결혼/출산 내집마련	자녀교육 부모퇴직 내집마련	자녀출가 자녀취업 부모사망 퇴직준비	노후시작 배우자사망 손자녀출생 발병관리
자산관리	주택청약, 개인연금 펀드상품 등 가입시작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험설계, 자녀교육 및 결혼 등 목적성 자금관리	은퇴 시 부족자금 점검하여 추가저축/투자	보유자산 대비 소비여력 점검 및 지출관리
부채관리	주택구입 등 대출발생 (상환여력 등 점검필요)		대출상환	주택전환 등 상환검토
투자관리	적극적 투자성향 시기로 너무 안전자산 위주의 저축은 물가상승률을 대비할 수 없으며 장기투자 기간에 맞춘 투자설계 필요		위험중립 투자성향시기로 생애 이벤트에 맞추어 투자자산의 효율적 안전자산 전환 설계필요	변동성이 큰 투자자산은 회피하면서, 100세시대 대비한 투자설계 필요

[3]노후 필요자금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2020년) 60대 부부 기준 적정 월 생활자금은 247만원이지만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93만원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여금을 통한 노후설계는 필수사항 입니다.

◎ 연령볔 코민연금 수령 금액

@ C02 4CC0 1004				
구분	부부기준		개인기준	
<u>↑</u>	최소	적정	최소	적정
50CH	215만원	296만원	130만원	182만원
60대	199만원	275만원	118만원	167만원
70대	172만원	236만원	104만원	147만원
80대 이상	155만원	213만원	91만원	130만원
전체	185만원	255만원	110만원	156만원

[※]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8차], 국민연금공단(2020)

◎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평균 지급액

구분	20년 이상	10 ~ 19년 이상	평균
평균	94만원	40만원	55만원

[※]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2021년 10월)

[※] 추가 교육을 원하시면 동양생명 콜센터(1899-47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수급권 보호 및 계약 이전 절차

[1]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2-(1) 참조)

[2] 계약이전 절차

- ①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 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 되도록 해야합니다.
-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 타 퇴직연금기관에서 동양생명으로 계약이전 시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작성 서류
1단계 (규약 검토)	· 기존 신고된 타금융기관의 규약을 기초로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련 조건 파악 (ex) 단수제 / 누진제 여부, 납부금 납부주기 등	· 기 신고된 타 금융기관의 규약 검토
2단계 (규약 변경 작성)	· 규약 변경 (퇴직연금사업자, 부칙 등 변경 사항 작성) · 변경 대비표 작성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 변경 작성된 규약 · 변경 대비표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3단계 (변경신고)	· 관할 고용 노동청 규약 변경 신고서 제출 · 신고 수리서 통보	· 변경 신고서 · 변경 작성된 규약 · 변경 대비표 · 근로자 괴반수 동의서
4단계 (동양생명 이전)	· 타 금융기관에 동양생명 적립금 이전 요청	· 고용노동부 수리 통보서를 기초한 계약 이전 처리

- ※ 제도전환 가능: 동일제도 내 전환, DB ⇒ DC, 기업IRP ⇒ DC
- ※ 제도전환 불가: DC ⇒ DB, DC/DB ⇒ 기업IRP
- ※ 최초 규약신고시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도입한 경우, 규약 변경 신고 없이 퇴직연금사업 내에서 제도 전환 가능함

9. 기업도산 등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 기업 도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 청구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 사업장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 사업장
미청구 적립금	폐업ㆍ도산 등 기타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청구 주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도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 청구절차 및 방법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

- · 사업장과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하여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 ·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모르는 경우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여 확인

〈통합연금포털 접속방법〉

- ① 금융감독원(https://fss.or.kr) → 통합연금포털 접속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② 이용절차: 서비스신청 및 이용동의 등 회원 가입→ 연금조회 신청(3영업일 소요)→연금조회
- ③ 조회정보: 퇴직연금 가입정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수령

〈 수령 금액 〉

제도 유형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급여형(DB)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X 적립비율*
확정기여형(DC)	납입부담금 ± 운용손익

* 적립비율 : 사용자가 납입한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예상액

※ 퇴직급여 수령액은 적립비율, 운용수익 등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

- · 확정된 퇴직급여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되며, IRP계정이 없는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 ※ 단, 개인형IRP의무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

구분	구비 서류
폐업 · 도산 사실 확인	· 폐업 사실 확인서(세무서, 국세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서 (지방노동관서) · 재판상 파산의 경우 법원 결정문 (법원)
퇴직 사실 확인	·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청구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 등 징구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 상실 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 사유 참조 등)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퇴직연금 지급액 계산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DB형 퇴직연금제도에 한함)
기타	·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지방노동관서) · 체당금 수령 확인 가능 서류(통장거래 내역 등)

※ 청구 안내 및 상담: 1899-4707



10.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기업우대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20% 기업우대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없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 업에 해당하는 사실인 확인된 날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의 인증(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회사에 접수된 날부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장래를 향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는 인증(선정)이 취소(또는 유효기간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취소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취소가 확인된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정 취소(또는 유효기간 종료)가 되는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우대 할인율을 유지합니다.

[1] 신청자격 및 할인율

구분	기업우대할인율	적용 기간
중소기업 ¹⁾	10%	매년
종업원수 100인이하 강소기업 ²⁾	20%	매년
 사회적기업 ³⁾	20%	매년

(주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주2) 강소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작지만 강한 사용재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 7가지 기준을 적용)

(주3)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

[2]증빙서류의종류

구분	증빙자료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종업원수 100인이하 강소기업	강소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

[※] 증빙서류의 종료일(또는 만기일 등)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신청접수 불가

[※] 증빙서류의 인증(선정) 및 취소(또는 유효기간 종료)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기업우대할인을 적용 및 종료할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기업우대할인을 유지할수 있도록 사용자는 성실하게 회사에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PART. Ⅱ 확정급여형(DB)제도 추가 교육



1.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현황 (별첨 참조)

납입연차	납입 기간	부담금 납입액
1년차		
2년차		
 3년차		
3년간 부E		

※ 세부내역은 별첨된 안내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된 경우 각 사업자별 퇴직연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전체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납입연차: 부담금 납입상황을 연단위로 표시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을 연단위로 구분하여 표시)
- ② 납입기간: 기준일 현재 직전 3년 중에서, 당해 납입연차(1년차, 2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기간 (도입기간이 3년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표시
- ③ 부담금 납입액: 장래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납입된 총액 [동양생명이 비주간사인 경우 동양생명(자산관리기관) 납입기준이며, 사용자가 납입한 연차별 납입 총액]

2.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1] 표준급여액 수준 (별첨 참조)

[단위 : 년, 원]

평균 근속 기간	평균 임금	표준급여액

※ 세부내역은 별첨된 안내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① 평균근속기간: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 근속기간의 합을 전체 가입자수로 나눈 값
- ② 평균임금: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총합을 전체 가입자수로 나눈 금액
- ③ 가입자의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④ 표준급여액: 평균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2]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예상 연금수령액(예시)

[단위 : 만원]

EITIOLLIT	70010	연금수령기간					
퇴직일시금	적용이율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천만원	2.0%	1,034	543	379	298	249	217
1억원		2,069	1,086	759	596	499	435

[※] 적용가정: 확정연금 / 연금수령주기: 연1회 / 세전연금수령액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별첨 참조)

[단위 : 원]

기즈이다	기준책임준비금		원사저리크	H2170#	Halulo
기군일시	계속	비계속	최소식답금	적립금액	식답미뀰

※ 세부내역은 별첨된 안내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① 기준일자: 사업연도 종료일
- ②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③ 최소적립금
 - − 2018년 ~ 2018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2019년 ~ 2019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통보, 보존

- ①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일 경우 부족금액을 최대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재정안정화계획서에는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한 경우: 사용자 요청 시 반환 가능
- ④ 적립금 부족의 해소 방안 및 과태료

조문	필요 서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7조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적립금의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1년 이내에 해소할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5.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1] 사용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상품의 적립금 안내 (별첨 참조)

운용	운용현황		
총납입	입금액		
총지	총 지급액		
-	수수료		
운용	운용수익		
	원리금보장형 상품		
적립금액	실적배당형 상품		
	합계		
누적 수익률			

[※] 세부내역은 별첨된 안내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적립금 운용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안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목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용하는데 있으며, 적립금 운용실적이 직접 사용자의 부담과 연결되므로 안정적인 운용목표를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의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립금 운용
 - ② 임금상승, 퇴직 등 퇴직급여채무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자산관리 실행
 - ③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소적립금을 항상 유지

6.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7.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

- 대상법인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용자에 한함
- 위워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하여 연1회 이상 회의 및 IPS 작성 필요
 - ② 위원장: 퇴직연금제도 운용 업무 담당 임원
 - ③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여 선출
-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인 경우에는 아래의 ① ~ ③의 인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① 과반수 가입노조에서 선출된 사람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하에 선출된 사람)
 -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함

PART. Ⅲ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 교육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1] 가입자가 자신의 수령금액을 점검하고 부담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부담금과 관련한 교육사항

- 부담금 만기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부담금 이율변동 시 사전에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부담금 납입현황 등 내역서를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2] 부담금 수준과 관련한 교육 사항

- ① 가입자별 사용자의 부담금액 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동양생명 홈페이지(www.myangel.co.kr) 통합로그인 → 퇴직연금 "운용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② 부담금 산정 방법
 -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연금계좌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3] 부담금 납입시기와 관련한 교육 사항

- ① 부담금 납입시기 및 납입 기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 된 납입 주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주기: 연납 / 반기납 / 분기납 / 월납 으로 선택 가능)
- ② 부담금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미납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 부담금 미납금액 납입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여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 ③ 부담금 납입에 따른 처리절차
 - 부담금 납입 시. 납입대상 가입자 및 기본정보(가입자명부)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액 및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선택한 상품으로 매수처리 합니다.
 - 회사는 부담금 납입 처리 완료 후 퇴직연금사업자에 부담금납입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교육사항

- 1) 부담금 미납 시 처리방법 및 지연이자
-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기일(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미납하는 경우, 미납한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지를 부담합니다.(월납 / 분기납 / 연납인지에 따라 부담금 미납여부 결정)
-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 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지급 지연되고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지연이자율 안내

-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율이 연20%, 최초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10%로 부과됩니다.

3) 부담금 납입지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기업형RP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에 따라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유예기일: 연장된 납입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의 정함에 따름

※ 지급유예기일: 연장된 기급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의 정함에 따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5] 부담금 납입현황은 "당해 퇴직연금 제도기간 중 사용자의 납입금액"을 대상으로 교육 - 부담금 납입현황 등 내역서를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2.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1] 가입자가 자신의 자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 원칙에 대해 교육

- 퇴직연금 투자원칙에는 장기투자, 적립식투자, 분산투자가 있습니다.
- ① 장기투자
 - 장기간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장기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여 기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② 적립식 투자
 -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 및 투자하는 방식이며, 증시상황이나 경기변동, 투자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해결합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정한 납입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 및 운영합니다.
 - 장기투자 가능하므로 투자적립금이 적더라도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금액이 늘어나는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 ③ 분산투자
 -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 동일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보다는 가격의 동향이 다른 자산에 나눠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적게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원칙과 관련한 교육사항

1) 자산구성 비율의 의의

- DC. IRP은 근로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연령 및 정년을 고려한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보수적 투자자	원리금보장형 및 채권중심 상품을 운용하여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반면 수익률은 낮습니다.
공격적 투자자	위험자산(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운용합니다.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운용위험이 커집니다.



2)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자산구성 비율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원리금보장형 100%
안정 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적금보다 높은수익을 위해 자산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원리금보장형 50% 실적배당형(채권형) 50%
위험 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적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원리금보장형 40% 실적배당형(혼합형) 50%
적극 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원리금보장형 20% 실적배당형(혼합형) 40% 실적배당형(주식형) 40%
공격 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원리금보장형 10% 실적배당형(혼합형) 40% 실적배당형(주식형) 50%

3)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의 개념과 필요성

-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주식과 같이 수익변동성, 즉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기투자를 하면 수익변동성이 줄어듭니다.
- 복리라함은 장기간 운용을 하면서 만기재예치등을 통해 투자수익이 원금에 재투자되어 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장기운용의 복리효과

- 복리라는 것은 투자수익이 재투자되어 운용되는 것이며, 투자기간은 길어질수록 복리효과가 커집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므로 복리효과가 최대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분산투자 및 투자시기의 분산

 일정 기간동안 투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적립식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한번에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는 거치식보다는 유리합니다.

③ 평균 매입단가 하락 효과

-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입 시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쌀때 많이', '비쌀때 적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 매입하면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짐)

④ 분산투자 및 투자대상의 분산

- 가격 변동이 다른 여러가지 운용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한가지 운용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낮춰줍니다.

⑤ 운용상품의 선정

- 퇴직연금 신규 가입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 퇴직연금 전체운용상품 중에서 회사 전용 라인업을 선택합니다.
- 회사 전용 상품 라인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 교체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근로자는 회사 전용 라인업에서 운용상품 및 구성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 위험과 수익구조

- 일반적으로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낮습니다.

위험(Risk)	자산운용에 있어 운용자산의 가격의 상승 또는 허락이라는 가격변동성을 의미하며, 위험이 크다는 것은 가격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익(Return)	운용상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미래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성과를 의미합니다.

※ 위험의 종류

종류	특징
가격변동 위험	· 투자에는 항상 투자자산 가격변동위험이 따름 (ex)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음
환율 위험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율위험을 고려해야 함 (ex) 미국달러화로 투자되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펀드의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볼수도 있음
신용 위험	·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유동성 위험	· 특정자산을 현금화하는데 따른 불확실성 (ex) 운용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금융시장에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 물가가 올라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 (ex) 물가가 6% 상승하고, 예금의 이자율이 4%라고 하면 실질 화폐가치는 2%



[2]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1) 원리금보장형 상품 안내

- 원리금보장형상품이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동양생명 이율보증형 상품	동양생명 금리연동형 상품	
수익구조		당사가 매달 공시한 적용금리를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만기 : 1년, 2년, 3년, 5년)	당사가 공시한 적용금리로 매달 금리가 변동	
상품제공기관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중도해지	일반해지	중도해지이율 적용(적용이율 x 80%)	해당월 적용금리 적용	
	특별해지	만기 적용 금리 적용	해당월 적용금리 적용	
상품 수수료		없음	없음	
상품매수시기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	
만기연장		새로운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시점에 자동재투자	_	
위험		원금과 이자가 보장 됨 (DC, IRP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 상세한 사항은 동양생명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배당형 상품 안내

-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결과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상품명	주식편입비율	주요특징	특별계정 운용보수
Active혼합형	40% 이내	시장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자산운용	0.65%
가치주혼합형	40% 이내	내재가치대비 저평가 우량주 위주로 자산운용	0.65%
배당주혼합형	40% 이내	고배당 우량주 위주로 자산운용	0.65%
인덱스혼합형	40% 이내	KOSPI200 주가지수를 추종하여 자산운용	0.58%
글로벌멀티인컴형	60% 이내	글로벌 리츠 및 주식 등 수익증권, ETF 로 자산운용	0.597%
주식형	60% 이상	국내주식시장을 KOSPI 지수 중심 추종하여 자산운용	0.40%
해외주식형	60% 이상	23개 선진국, 26개 이머징국가로 이루어진 Index를 포괄하는 주가지수인 "MSCI AC WORLD 지수"의 수익률 추종하여 자산운용	0.49%

[※] 상세한 사항은 동양생명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 퇴직연금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 법적의무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으로 2023년 7월 1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상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함)
- 적용대상: DC, IRP 가입자
- 가입자는 제시 받은 상품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의 구성

상 품	주요 내용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율보증형, 정기예금, ELB 등)
TDF (Target Dated Fund)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집합투자증권
BF (Balanced Fund)	투자위험이 서로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금융시장상황과 투자한 자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SVF (Stable Value Fund)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SOC 펀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상품과 TDF, BF, SVF, SOC펀드로 구성

※ 디폴트 옵션의 기능

0%금리,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규약에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운용방법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자가 투자 유형을 선택 (사전 지정 운용방법)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운용을 지시하지 않으면 해당 가입자에게 사전에 지정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된다고 통지



통지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 운용



※ 동양생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안내

구분	상품명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예금자 보호	주요정보	승인일자
원리금 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	초저위험	대상 (5천만원 한도)	· 구성상품 : 동양생명 이율보증형 ·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안정적 성과 추구 · 이율보증형 3년 만기 상품으로 금리가 확정되고,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구조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PF1	저위험	비대상	구성상품 : 동양생명글로벌자산배본적극형(30%) + 동양생명이율보증형(70%) 국내외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원자재 등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기대수익률 추구 사장상황에 맞게 국내외 채권 및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분산투자 하는 펀드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PF2	저위험	비대상	· 구성상품 : 동양생명글로벌에셋밸런스(40%) + 동양생명이율보증형(60%) · 미국 등 다양한 주요 국가들의 주식과 채권에 6:4 비중으로 투자 ·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 40%∼80% 범위내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 추구(ETF 중심 투자)	2023.03.07
원리금 비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PF1	중위험	비대상	・ 구성상품: 동양생명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60%) + 동양생명이율보증형(40%) ・ 국내외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원자재 등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여 리스크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기대수익률 추구 ・ 시장상황에 맞게 국내외 채권 및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분산투자 하는 펀드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PF2	중위험	비대상	· 구성상품 : 동양생명글로벌에셋밸런스(70%) + 동양생명이율보증형(30%) · 미국 등 다양한 주요 국가들의 주식과 채권에 6:4 비중으로 투자 ·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 40%~80% 범위내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 추구(ETF 중심 투자)	2023.03.07
원리금 비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고위험	비대상	구성상품: 동양생명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100%)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 및 주기적 자산배분 조정을 통한 장기수의 추구 시장환경 및 글로벌 자산군 장기 전망에 따라 섹터 및 지역 ETF배분 통한 분산투자 적극적인 변동성 제어를 통해 위험 대비 수익률 추구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BF2	고위험	비대상	구성상품: 동양생명글로벌에셋밸런스(100%)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 및 주기적 자산배분 조정을 통한 장기수의 추구 시장환경 및 글로벌 자산군 장기 전망에 따라 섹터 및 지역 ETF배분 통한 분산투자 경기 국면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하는 스윙 구조 판드	2023.03.07

[※] 상세한 사항은 동양생명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적배당형 상품의 매수, 환매 및 기준가

- 실적배당형상품 매수 및 환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을 매수할 때

 [접수일 D]
 [D+1 영업일]
 [D+2 영업일]

 매수 접수
 매수 운용지시
 매수 정산(기준가격 매수)

 • 실적배당형 상품을 환매할 때
 [D+1 영업일]
 [D+4 영업일]

 매도 접수
 매도 운용지시
 매도 정산(기준가격 매도)

4. 법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 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1] 표준형 DC(Multi-employer DC)제도 안내

- ① 둘 이상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하는 표준규약을 활용하여 DC형제도를 도입하는 제도 입니다.
-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표준규약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2]도입사유

- ①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② 1개의 퇴직연금제도에 복수의 기업이 가입할 경우. 적립금액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
- ③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표준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규모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에 비해 가입 기업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표준형 DC제도 도입 프로세스

- (1)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 DC제도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합니다.
- ②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리통보서를 발급합니다.
- ③ 기업들은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표준형 DC제도를 가입 신청합니다.
-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 DC제도가입 기업의 근로자대표 동의서 등 서류를 보관합니다.

[4] 표준 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 1)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가입대상 사업장, 제도명칭,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 기준, 디폴트 옵션,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 2)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표준규약 내용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지침, 디폴트옵션 등)의 이행, 계약의 해지 · 변경 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5.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약이전과 관련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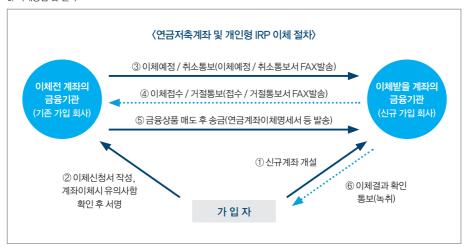
1) 이체를 위한 요건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를 경과하고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간 이체가 가능합니다.(단, 개인형IRP의 경우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년 경과 규정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⁴)

2) 이체에 따른 효과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이체 시 인출로 보지 않음으로 이체 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이체방법 및 절차



4) 구비서류: 연금계좌 이체신청서 및 가입자 유의사항, IRP 해지신청서, 주민등록증, IRP계좌 안내장



퇴직연금 대표전화 1899-4707

제작: 연금사업팀 (2024년 04월) | 준법감시필: 02-202404-001(2024.04.02~2025.04.01)